

1. 개정이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 개정,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절차와 수수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 양도 시 등록번호·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양도 시 정보전달 자료 간소화(안 제36조제1항)

현행 규정은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등록번호·신고번호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등록번호·신고번호를 대신하여 등록·신고 여부를 기재토록 개선함

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도입 등(안 제42조 신설)

-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및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자나 위탁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를 하도록 변경신고의 사유를 추가함
- 2)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

다.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절차 규정(안 제55조의3 신설)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

라. 중점관리물질 신고·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수료 규정 보완(안 별표11)

현행 50,000원인 중점관리물질 신고 수수료를 20,000원으로 조정하고,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수수료와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수료를 각각 15,000원, 2,000원으로 책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등록번호·신고번호만”을 “등록·신고 여부만”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제품에 함유(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를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으로, “전까지”를 “전에”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41조제5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란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함유량 대비 30% 이내로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수입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위탁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을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을 “법 제32조제1항에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으로, “신고”를 “신고·변경신고”로 한다.

제5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및 제41조제5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중에서 승계 대상이 되는 지위에 관한 서류의 원본

2. 지위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 승계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별표 11 제1호마목 금액란 중 “50,000원”을 “2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15,000원
사.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2,000원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자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신고사항	중점관리 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	①전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 물질 연간 총량(톤)		②중점관리물질 분류 및 유해성정보	
	③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④제품 의 용도	⑤제품 내 중 점관리물질 의 용도(기능)	⑥제품 내 중점 관리물질의 인체 주요 노출경로	⑦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 (%)	
					⑧제품별 중점관리 물질 연간 총량(톤)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수입자 (신고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상호(명칭)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대표자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수입량(톤)	⑭수입국
⑮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자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사항	①신고번호	중점관리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변경사항	변경내용					
[] 제품을 새로 생산·수입	②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②제품의 용도	②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	②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인체 주요 노출경로	②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량(%)	②제품별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 노출정보	제품명	변경 전		변경 후		
[] 용도						
[] 함유량						
[] 물질별 총량이 50% 이상 증가	②전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변경 전			변경 후		
[] 수입자	②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②대표자	②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②수입량 (톤)	②수입국
[] 수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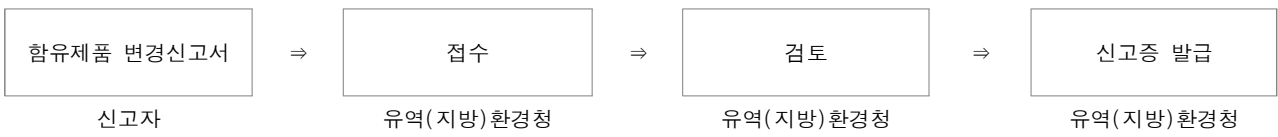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15,000원

작성방법

- ①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에 발급된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②란의 항목별 작성방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중점관리물질 신고서와 동일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제 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중점관리물질명 :
6.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7.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
8. 신고 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방(유 역) 환 경 청 장

직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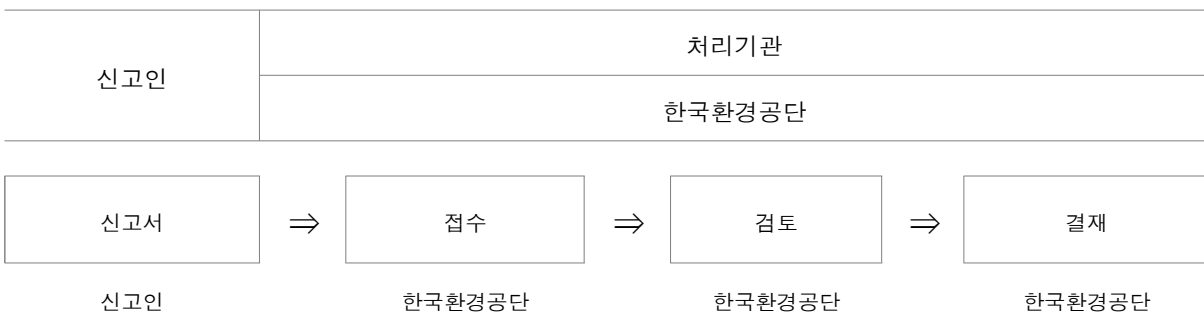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
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
산·수입하기 전까지 중점관리
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제
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 ② ~ ⑥ (생략)
- <신설>

----- 전에 -----

1. ~ 5.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

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
물질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41조제5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
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란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함유량 대비 30% 이내로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수입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위탁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은 제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4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
-----.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삭 제

2. ~ 3. (생 략)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
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와 관련된 자료

5.·6. 삭 제

7.·8. (생 략)

② (생 략)

<신 설>

-----.

-----.

2.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2조제1항에 및 제33조
제1항에 따른 ----- 신고
· 변경신고-----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
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
가 선임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
지 제38호의4서식의 승계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
서,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

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및 제41조제5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중에서 승계 대상이 되는 지위에 관한 서류의 원본

2. 지위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 승계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